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3
----------	----------

제출연월일	2008. 1.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개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각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수수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제1조, 제5조)

⇒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자

나. 제증명 등 수수료 사무 및 요율의 조정(별표 1)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민원사무 6건 삭제

⇒ 부양가족 사실확인, 무적자 사실확인, 독자 사실확인,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 경작 사실확인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민원사무명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수수료를 1,3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함

- 의료법제33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수수료를 (15,000원 ~ 50,000원)에서 (20,000원 ~ 100,000원)으로 조정함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신고 10,000원으로 조정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무 추가
 -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민원사무명칭 조정 및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2) 「지방자치법제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7. 11. 8. ~ 11. 27.) 결과 : 의견 없음
-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7. 12. 26.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자, 정보공개 및 감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정보공개 및 검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증명등”을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자 각종 신고서등”을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로,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u>기타</u>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u>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자, 정보공개 및 감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그 밖에</u>----- -----<u>정보</u> <u>공개 및 검사 등</u>----- ----- ----- -----.</p>
<p>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u>제증명등</u>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요율) ① -----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u>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u>의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u>제증명등</u>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u>제증명등</u>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u>본적주소</u>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u>제증명등</u>은 예외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자동차에 관한 <u>제증명등</u>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p>	<p>제4조(기준) ① ----- -----<u>제증명 등</u>----- ----- -----<u>제증명 등</u>----- ----- ----- ----- <u>등록기준지</u>----- ----- --<u>제증명 등</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증명 등</u>-----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u>제증명등</u>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p>	<p>----- <u>제증명 등</u> ----- ----- ----- -----.</p>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u>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자 각종 신고서등</u>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u>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u>가 곤란할 때에는 <u>제증명등의 서류</u>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징수방법) ① ----- ----- <u>제증명 등 발급신청서</u> ----- ----- -----. -----<u>제증명 등</u>----- -----<u>제증명 등</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u>제증명등</u>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9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각 호의 <u>어느 하나</u>----- <u>제증명 등</u>----- ----- -----.</p> <p>1~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이장재직 사실 확인	1 통	800	
(2) 호(제)적부 멸실 확인	1 통	1,000	
(3) 재직(퇴직, 경력) 증명	1 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 통	1,000	
(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 통	1,000	
(3) 조립 실적확인	1 통	1,000	
(4)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1 통	1,000	
(5)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	1 통	1,000	
(6) 피해사실확인서	1 통	1,000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1 필지	800 200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 주택	800 200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1 건	30,000	
(나) 개 인	1 건	20,000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가) 법 인	1 건	5,000	
(나) 개 인	1 건	3,000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 건	2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 통	800	
(2) 지방세 납세증명	1 통	800	
5.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 통	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 통	1,0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 통	1,000	
(4) 실적증명(공사·제조)	1 통	1,000	
(5) 보상금 지불증명	1 통	1,000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 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1 건	3,000	
7.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1 건	1,000	
(2) 입지기준 확인신청	1 건	31,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 건	20,000	
(4)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1 건	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 건	20,000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 건	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	1 건	20,000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1 건	100,000	
(9)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 건	51,000	
(10)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 건	24,000	
(1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1 건	24,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 건	5,000	
8. 문화·관광등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 건	40,000	
(나)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 건	2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 건	20,000	
(라)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 건	10,000	
(2)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1 건	10,000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1 건	20,000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등록, 신고)	1 건	10,000	
(5) 체육시설업 신고	1 건	30,000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 건	10,000	
(7)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 건	31,000	
9. 환경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 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1 건	5,000	
10. 건설등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 건	5,000	
(2)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1 건	1,000	
(3)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1 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신청	1 건	1,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5)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1 건	5,000	
(6)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 건	5,000	
11.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 철거사실 증명	1 통	800	
(2)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1 통	800	
(3) 표준주택 설계도면	1 호	1,500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 건	600	
(5)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 건	1,000	
(6)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7)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8)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9)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10) 체비지 분할 신청	1 건	1,000	
(11) 토지대금 완납증명	1 건	1,000	
(12)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 건	1,000	
(1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 건	1,000	
(14)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 건	1,000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1,500	
12. 농수축산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건	800	
(2)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1 건	10,000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1 건	5,000	
(4) 유해어업 사용허가	1 건	5,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3.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100,000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40,000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40,0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 건	20,000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 건	5,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2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 건	10,000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 건	8,000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건	8,000	
(4) 위생관련 영업신고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건	22,0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 건	12,000	
(다) 세척제제조업 신고	1 건	29,000	
(라)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 건	17,000	
(마)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고	1 건	14,000	
(바)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 건	5,000	
14.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1 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 건	2,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 (가) 신 규 (나) 갱 신	1 건 1 건	4,000 2,000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15. 그 밖의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건	500	

[참고자료]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신상에 관한 사항			
(1) 부양가족 사실확인	1통	800		<삭 제>			
(2) 무직자 사실확인	1통	800		<삭 제>			
(3) 독자사실확인	1통	2,000		<삭 제>			
(4) 이장재직 사실 확인	1통	800		(1) 현행 (4)와 같음	---	----	
(5) 호(제)적부 멸실 확인	1통	1,000		(2) 현행 (5)와 같음	---	----	
(6) 재직(퇴직, 경력) 증명	1통	1,000		(3) 현행 (6)과 같음	---	----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1건	1,000		<삭 제>			
(4)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	1통	2,000		<삭 제>			
(5) 경작 사실확인	1통	1,000		<삭 제>			
(6) 조립 실적확인	1통	1,000		(3) 현행 (6)과 같음	---	----	
(7)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1통	1,000		(4) 현행 (7)과 같음	---	----	
(8)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	1통	1,000		(5) 현행 (8)과 같음	---	----	
(9)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	1통	1,000		(6) 피해사실확인서	---	----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주택 가격확인	1호	800		(2) -----	1주택	---	
※ 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		200		※ --- 주택 -----		---	
(3) 공동주택 가격확인	1호	800		(3) -----	1주택	---	
※ 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		200		※ --- 주택 -----		---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4) -----			
- 법인	1건	30,000		등록			
- 공인중개사(중개인)	1건	20,000		(가) ----	---	---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나) 개인	---	---	
- 법인	1건	30,000		(5) -----	---	---	
- 공인중개사(중개인)	1건	20,000		-----			
(6) (생략)				-----			
(가) -----				(가) -----	---	---	
(나) 개인				(나) 개인	---	---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6.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국·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5,000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	---	
(2) 국·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1건	1,300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1건	3,000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7.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3) (생략) (4)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5) (생략)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등록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업) 등록 (8)~(11) (생략) <신설>	1건 1건 1건	20,000 20,000 20,000		7.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3) (현행과 같음) (4) 석유판매업(일반, 용제 대리점) 등록 (5) (현행과 같음) (6) ----- 신고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록 (8) ~ (11) (현행과 같음)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 --- --- 1건	--- --- 5,000	
8. 문화·관광등에 관한 사항 (1)~(2) (생략) (3)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 (4)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 (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설> (6)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1건 1건	20,000 10,000 5,000 31,000		8. 문화·관광등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허가, 등록, 신고) (5) 체육시설업 신고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7) 현행 (6)과 같음	--- --- 1건 1건 ---	--- --- 30,000 10,000 ---	
10. 건설등에 관한 사항 (1) (생략) (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3) 건설기계 저장(말소)등록 (4)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 접용, 사용)허가 (5)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신청 (6)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7)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1,000 공사비 또는 접용료의 1/1,000 1,300 5,000 5,000		10. 건설등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 (3)과 같음 (3) 현행 (4)과 같음 (4) 현행 (5)과 같음 (5) 현행 (6)과 같음 (6) 현행 (7)과 같음	--- --- --- --- --- ---	--- --- --- --- ---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3.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1) -----			
- <u>종합병원 개설허가</u>	<u>1건</u>	<u>50,000</u>		<삭 제>			
- <u>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u>	<u>1건</u>	<u>30,000</u>		(가) <u>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u>	<u>1건</u>	<u>100,000</u>	
<신 설>				(나) <u>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u>	<u>1건</u>	<u>40,000</u>	
- <u>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u>	<u>1건</u>	<u>20,000</u>		(다) -----	<u>1건</u>	<u>40,000</u>	
<신 설>				----- ----- ----- (부속의료기관 포함)			
- <u>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u>	<u>1건</u>	<u>20,000</u>		(라) <u>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 의료기관 포함)</u>	<u>1건</u>	<u>20,000</u>	
- <u>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사항 변경허가(신고)</u>	<u>1건</u>	<u>15,000</u>		<삭 제>			
- <u>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필증 재교부</u>	<u>1건</u>	<u>5,000</u>		(마) <u>(현행과 같음)</u>	---	---	
(2)~(4) (생략)				(2)~(4) <u>(현행과 같음)</u>			